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
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 등에 대한 조문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기업 모집 홍보시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추가함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주기업 모집기준 명확히 규정 (제4조 제1항)

- 입주대상 기업 모집기준을 “기업을 설립하려는 자”와 “당해 모집 공고일 현재,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”으로 개정하여 조문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

나. 입주자 모집공고 (제4조 제2항)

- 입주자 모집공고를 “구보 및 일반신문”에서 “구보, 일반신문 또는 구홈페이지”로 변경하여 모집공고를 신속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

다.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(제6조 제8항)

-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“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.”를 신설함.

3. 개정근거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8. 2. 21 ~ 3. 12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08. 3. 27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으로 한다.”로 하고,
동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
2. 당해 모집공고일 현재,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
제4조제3항의 “구보 및 일반신문”을 “구보, 일반신문 또는 구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입주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, 최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입주대상 등)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사업목적과 분야가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의거 고시된 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”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.</p> <p><신설> <신설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~ ⑦ (생략) <신설></p>	<p>제4조(입주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으로 한다.</p> <p>1.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. 당해 모집공고일 현재,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</p> <p>② ----- - 구보, 일반신문 또는 구홈페이지 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.</p>